

의안번호	2213167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10.21.
추 계 번호	25B52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예방 등)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실시 시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려진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6항)	
3	안 제11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76조의2제2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예방 등)	—	• 미대상(제1항) –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2항) –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 미첨부(제1항 및 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	• 미대상(제6항)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 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린 사람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116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현행 「근로기준법」¹⁾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물량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인지건수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 조사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1)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자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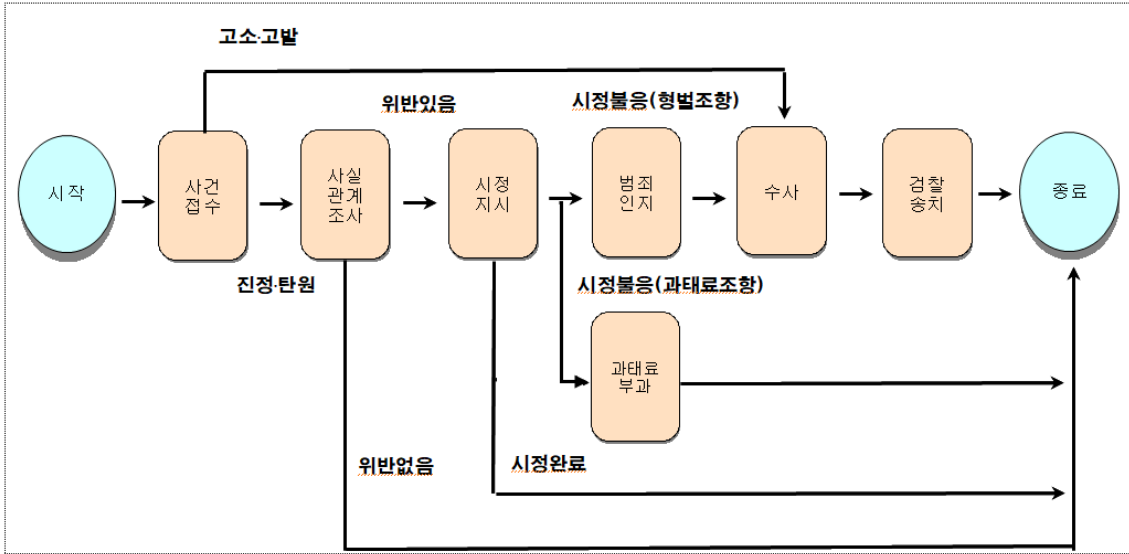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계	처리완료							처리중
			개선 지도	과태료	검찰송치		취하	기 타		
					기소			법 위반없음		
2020	5,823	5,823	894	－	70	26	2,459	2,400	1,365	－
2021	7,774	7,774	912	39	148	64	2,953	3,722	2,247	－
2022	8,961	8,961	800	161	221	100	2,755	5,024	2,636	－
2023	11,038	11,038	845	272	218	96	2,301	7,402	3,623	－
2024	12,253	11,751	1,021	213	224	117	3,132	7,161	3,836	502

자료: 고용노동부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과정



자료: 고용노동부